

제5절 조선후기 광양의 재정구조

조선시대에 보유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읍세를 나눌 때에 광양(光陽)은 대·중·소·잔읍 가운데 소읍(小邑)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토지나 인구에 있어서 그 규모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다와 강, 그리고 산지와 평야를 끼고 있어 특산물은 상당히 풍부했던 것 같다. 읍지(邑誌)에 그 종류가 다양하게 실려있고, 풍속으로 “부유함과 화려함을 숭상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관내에 장시(場市)가 4개가 있었고, 포구(浦口) 또한 7~8개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품의 유통이 활발하였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양에서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였는가를 살펴보겠다.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재정기반으로는 토지와 호구 및 토산물이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전기에는 전세·공납·역이, 후기에는 전세(田稅)·군포(軍布)·환곡(還穀)이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후기에는 진공(進貢), 해세(海稅), 식리(殖利) 등도 이전과는 달리 중요한 재정수입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세목을 통해 징수된 수입은 일부는 중앙이나 감영에 상납하고, 일부는 광양의 통치비로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의 광양의 재정구조를 다루는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수입원으로 꼽을 수 있는 전세, 군포, 환곡, 해세, 진공, 식리를 우선 살펴보겠다. 이어 그러한 세목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훈국선의 임운, 군포전의 이식, 보창·외창의 설치, 토산물의 상납, 지소·민고의 운영 등을 알아보겠다. 다루어야 할 분야가 더 있겠지만 이상의 주제만으로도 조선후기 광양의 재정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별다른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1. 전세와 훈국선(訓局船)의 임운

전세는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조선 사회는 농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었고, 국가 수입의 대부분은 전세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징세와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는 말할 것 없고, 직접 납세를 하는 농민, 그리고 지주층인 양반 모두 전세의 책정과 수납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재정기반으로는 토지와 호구 및 토산물이 있었다.

을 수 없었다.

전세의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토지 규모와 세목 및 세액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와 관련하여 운송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광양의 토지 규모, 즉 결수(結數)를 알아보도록 하자. 토지의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가 양안(量案)이다. 양안은 원칙적으로 20년마다 양전(量田) 사업을 실시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전라도의 경우 선조대, 광해군대, 인조대, 숙종대에만 각각 1회씩 양전이 실시되어 그 때에만 양안이 작성되었음에 분명하다.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위해 원칙대로 양전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였다. 양안에는 토지의 규모나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유나 경작관계도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양안은 매우 중요한 분석 자료가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양의 양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광양 지역의 토지 보유

결수와 경작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읍지에는 광양의 토지 면적이 간략하나마 수록되어 있다. 그것을 이용하여 조선시대 광양의 토지 면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세종대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2,010결로 기록되어 있으나, 후기에는 이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즉, 18세기 중엽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2,005결(전 530결, 답 1,475결),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편찬된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2,925결(실결 2,005결), 19세기 중반 철종대에 편찬된 『광양현각소사례책(光陽縣各所事例冊)』에는 2,192결(전 564결, 답 1,627결), 19세기 전반 순조대에 편찬된 『여도비지(輿圖備志)』에는 2,837결, 19세기 후반 고종대에 편찬된 『광양읍지(光陽邑

誌)』에는 2,837결(전 962결과 답 1,875결, 각양면세와 진잡탈 669결과 실결 2,168결)로 기록되어 있다.

토지명	결수
早田	十八百三十結
水田	二千四百四結
進貢全鰓	生鰓 乾熟鰓
魚	秀魚卵 紅蛤 海蔘 小海衣 乾秀粉
養	早養 甘谷 多士十 生雞 塩銀
口魚	袖子 石榴 葉古 白貼扇 蒜
別扇	白油別扇 靑大竹
糶軍資倉米	九十九石 租 十一百七十石
賑色米	二升六斗二合 租 石三百九十一

사진2-71 : 여지도서(1760년) 상 광양현의 토지 규모

〈표2-27〉 조선시대 광양의 토지 규모		
시기	자료	토지 결수
15세기 중반(세종)	『세종실록지리지』	2,010결
18세기 중엽(영조)	『여지도서』	2,005결
18세기 후반(정조)	『해동지도』	2,925결
19세기 전반(순조)	『여도비지』	2,837결

시기	자료	토지 결수
19세기 중반(철종)	『광양현각소사례책』	2,192결
19세기 후반(고종)	『광양읍지』	2,837결

이렇게 볼 때 광양은 초기에 2,000결 정도, 후기에는 2,800~2,900결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농지 규모라면 1~2만결에 이르는 나주·순천·영광 등에 비하여 열악한 고을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광양을 읍세(邑勢)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에 대·중·소·잔읍 가운데 소읍(小邑)으로 불렀던 것이다. 또 후기에는 2,800~2,900결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전기보다 40%이상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농지가 후대로 갈수록 증가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이렇게 광양의 농지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이 지역에 야산이나 갯벌 또는 하천 저습지나 바닷가 갯벌이 많고, 그것을 개발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밭보다 논이 배 이상 많았음도 알 수 있다. 큰 하천을 끼고 있는 넓은 평야지대는 없지만, 산간 계류(溪流)를 이용하여 논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결과일 것이다. 1724년(경종 4)에 사헌부(司憲府)에서 전현감 이정엽(李廷燁)의 비행을 논하면서,

전현감 이정엽(李廷燁)은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삼남(三南) 양전(量田) 때에 제전장에 사인(私人)을 보내는가 하면, 바닷가 갯벌에 제방을 막은 곳이나 산골짜기의 새로 일군 땅들을 사패(賜牌), 혹은 입안(立案)을 사칭하고 모조리 불법으로 명의를 바꾸어서 백성들이 세업(世業)의 전지를 하루아침에 빼앗겼다고 하니, 권세를 믿고 법을 멸시하는 그의 행위는 향곡(鄉曲)의 교활한 토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지방관으로 하여금 수교(手敎)에 의거하여 백성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서 궁핍한 백성들이 직업을 잃는 폐단을 면하도록 하소서.¹⁾

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즉, 주민들이 바닷가 갯벌에 제방을 막거나 산골짜기의 경사지를 일구어 확충한 전답을 전 광양현감 이정엽이 강탈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광양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한 신전(新田) 개간이 상당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전답에 부과되는 전세의 세목(稅目)과 세목별 세액(稅額)은 어떠하였을까. 조선건국 초기에는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여



광양의 농지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이 지역에 야산이나 갯벌 또는 하천 저습지나 바닷가 갯벌이 많고, 그것을 개발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밭보다 논이 배 이상 많았음도 알 수 있다.

1) 『경종실록』 14. 경종 4년 5월 임술.



17세기 인조(仁祖) 때에 영정법(永定法)으로 법제화되어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논은 쌀 4두, 밭은 콩 4두를 전세(이를 正稅 또는 稅米라 한다)로 고정하였다.

전세를 거두었는데, 이는 농민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 주인이 농사의 작황을 일일이 답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전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대체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전세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사자의 농간이나 부정으로 인해 공정을 기하기가 어려워 세종(世宗 : 1418~1450) 대에는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으로 개정되었다. 공법은 수년간의 수확고를 평균하여 평년의 수확량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전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과 척박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구분하고(전분 6등법), 매년의 풍흉에 따라 해를 9등급으로 나누었는데(연분 9등법), 보통 수확량의 20분의 1인 1결당 최고 20두에서 4두를 국가에 전세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은 풍흉과 비옥에 따라 차등 있게 전세를 거두는 것으로 매우 번잡스러웠다. 그래서 이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대신 당년의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의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1결당 4두나 6두를 징수하는 정액세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 정액세제는 17세기 인조(仁祖) 때에 영정법(永定法)으로 법제화되어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논은 쌀 4두, 밭은 콩 4두를 전세(이를 正稅 또는 稅米라 한다)로 고정하였다.

그렇다고 전세가 정세(正稅) 4두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이 외에 삼수미(三手米) 1두 2승, 대동미(大同米) 12두, 결작(結作) 2두, 포량미(砲糧米) 1두 5승, 운반과 수납에 수반된 각종 잡비, 그리고 지방재정 충당을 위한 잡역세(雜役稅) 등도 전세 명목으로 징수되었다.

이 가운데 삼수미는 선조대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한창인 가운데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훈련도감 소속 삼수병의 급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충청·경상·황해·강원 5도에서 1결당 2두 2승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인조대에 실시한 양전(量田)에 의하여 전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경상·전라·충청 3도에 대해서는 1두를 감액하여 1결당 1두 2승을 삼수미로 징수하였다.²⁾

대동미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창설된 세목이다. 대동법은 공납제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 실시하기 시작한 뒤,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효과에 힘입어 17세기 중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확대되었고, 1708년(숙종 34)에는 황해도에까지 실시되었다. 전라도의 경

2) 『증보문헌비고』, 전부고 8.

우 인조대에 창설한 삼남대동법이 곧바로 폐지되면서 중단되었다가, 1658년(효종 9)에 연해(沿海) 27읍에 대동법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산군(山郡) 26읍에는 현종 3년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3년 뒤에는 지주층과 방납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해읍(海邑)·산읍(山邑)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폐지되었다가, 그 다음해인 현종 7년에 다시 시행되는 곡절을 거쳤다. 치폐를 반복한 곳은 전라도가 유일하였으니,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였던 것 같다. 대동법의 실시로 대동미를 1결당 쌀 12두씩(혹은 그에 상당하는 布나 錢)을 거두어 일부는 봄에 상납미(上納米)라 하여 중앙에 상납하고, 일부는 가을에 유치미(留置米)라 하여 본읍에 두고 지방재정으로 충당하였다.³⁾

광양은 18세기 후반의 경우 대동미 2,533석을 거두어 상납미 980석을 상납하고, 유치미 1,553석을 광양의 각종 경비로 사용하였다.⁴⁾ 그러니까 대동미 가운데 39%를 상납하고, 나머지 61%를 지방경비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1663년(현종 4) 호남 대동법을 설행할 때에 상납미가 42%, 유치미가 58%였던⁵⁾ 것에 비하면 18세기 후반 광양의 재정상태는 다소 여유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의 경우 2,312석을 거두어 상납미가 1,708석(74%), 유치미가 604석(26%)였으니,⁶⁾ 광양의 재정상태는 후대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인 추세여서 후대로 갈수록 상납미가 증가하고 유치미가 감소하였다. 그러면 유치미는 어디에 쓰는 것이었을까. 대동법 제정 당시 유치미는 관수, 유치지지, 사객지공, 제사, 군기, 선박 개건조, 쇠마, 우마 견군, 진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⁷⁾

결작은 1750년(영조 26)에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면서 새로이 창설한 세목이다. 균역법이란 농민들이 지고 있는 군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정 1인당 1년에 2필을 내던 것을 1필로 삭감한 것으로, 그로 인한 국가재정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궁방(宮房)이나 중앙기관에서 점유하던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새로이 전결 1결당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2두씩(혹은 결전이라 하여 돈 5전) 징수하게 하고, 선무군관(選武軍官) 시험의 불합격자에게 군관포를 징수하는 한편, 몰래 숨겨두었다가 착복하는 수단이 되는 은결(隱結)을 적발하여 조세를 징수하였다. 광양은 결작을 결전(結錢)이라 하여 돈으로 수납하였다.

또한 포랑미는 대원군(大院君) 집권기에 서양 세력의 접근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1871년(고종 8)에 창설한 세목이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전답에 결당 1두를 징수하다, 증액하여 1두 5승을

3) 김옥근, 「전라도 대동법」,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4) 『여지도서』, 대동.

5) 『현종개수실록』 8, 현종 4년 3월 경진.

6) 『광양읍지』, 대동.

7) 『전남도대동사목』.

8) 김옥근, 「세역의 토지집중」, 『조선왕조재정사연구』 I, 일조각, 1984.

9) 김진봉, 「전세제의 개편」,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81.

10) 『광양현각소사례책』, 관노청.

11) 김택진, 『조선 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거두었던 것이다.⁸⁾

잡비는 전세의 징수로부터 상납까지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하역료, 운송료 등 각종 잡다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18세기 중반 영조 때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는 7가지 종류의 잡비가 수록되어 있다. 가승미(加升米)는 세곡이 다른 물질의 침해로 손실되는 양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1석당 3승이다. 곡상미(斛上米)는 세곡의 자연적인 부패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1석당 3승이다. 창역가미(倉役價米)는 강창과 경창에 입고할 때의 수수료로 1석당 6승이다. 이가미(二價米)는 세곡의 하선·입창 때 고용되는 인부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1석당 7합 5작이다. 창작지미(倉作紙米)는 군자·광흥·풍저창 등 여러 경창에 입고할 때에 종이 값 명목의 수수료로 1석당 3승이다. 호조작지미(戶曹作紙米)는 납세 때 호조에 공문서 작성용 종이 값 명목으로 상납하는 수수료로 1석당 1두 5승이나 1읍에서 5석 이상을 넘을 수 없다. 공인역가미(貢人役價米)는 1721년 경종대에 신설되어 호조 및 군자·광흥·풍저창 등에 전속된 공인의 역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1석당 6승이다.⁹⁾ 이렇게 볼 때에 7가지 잡비는 국초부터 있었던 것이 있고 후기에 신설된 것도 있었고, 그 액수를 합하면 1석당 3두 4승 7합 5작이나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법으로 허용된 부가세 이고, 이 외에 지방군현에서 자체적으로 거두는 것도 있었다. 광양의 경우 세곡을 거둘 때에 전세고자(田稅庫子)가 1석당 낙곡(落穀)이라는 이름으로 2승을 거두어 감관과 색리의 음식비와 수조채(收租債: 세곡 납부 업무와 관련된 부가세) 등 각종 경비에 사용한 적이 있었다.¹⁰⁾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에서 거두는 잡역세를 결렴(結斂)이라고 한다. 결렴은 용도에 따라 그 명목이 매우 다양하다. 경·영·면주인들의 수고비를 충당하는 주인역가(主人役價), 수령의 일일 식사에 소요되는 치계시탄가(雉鷄柴炭價), 말을 임대하는 데에 소요되는 고마가(雇馬價), 수령 교체시에 소요되는 영송비(迎送費) 등이 그것이다. 초기에는 이들 세목을 그 때 그 때 개별적으로 징수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점차 통합 징수하여 분배하는 방안으로 고쳐졌다.¹¹⁾ 이러한 현상은 광양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양읍지』에 따르면, 잡역조(雜役條)로 매결당 미 2두씩 총 263석을 거두어 관청(수령) 생물가(生物價)로 60석, 각면 주인역가(主人役價)로 118석, 각종 공용비(公用費)로 45석, 순영(巡營) 주인역가로 324석, 병영(兵營) 주인역가로 20석, 수영(水營)

주인역가로 6석, 전영(前營) 주인역가로 1석을 사용하였다. 부족한 306석은 토지에서 일종의 수세장부인 계판(計版)을 이용하여 추가 징수한다 하였다.¹²⁾ 이 외에 각종 제사에 쓰이는 양(태인도 소재)과 돼지(본창 소재)를 사육하는데 소요되는 조(租)를 1부(夫)에 2두씩 거두어 목양자(牧養子)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광양현각소사례책).

이렇게 볼 때 조선후기에 국가에서 토지 1결에 부과하는 세금은 4두(정세) + 1두 2승(삼수미) + 12두(대동미) + 2두(결작) + 1두 5승(포랑미) + α(잡역세와 잡비), 즉 20두 7승 + α가 되는 것이다. 실제 광양에서는 잡비 때문에 법정 세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납부하였다. 가령, 매결당 대동미를 13두 1승 2합 5승을, 전세를 7두 5승을, 결전을 5전 1분을 부담하였던 것이다.¹³⁾ 이러한 나머지 법정 세액보다 5배가 많은 100두 이상을 전세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언급한 바 있으니, 결코 광양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세목이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궁방전, 둔전, 서원전, 향교전 등 각종 면세전(免稅田)은 제외되고, 심한 재해를 입었거나 농사를 짓지 못한 진전(陳田) 또한 수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농지에서 각양면세전과 진잡탈을 제외한 실결(實結)에 전세가 부과되었던 것이다. 19세기 고종대의 『광양읍지』에 따르면, 전체 전(田 : 밭) 962결 가운데 각양면세전이 149결, 진잡탈전이 233결 등 모두 382결이 수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직 실전(實田) 579결에만 과세되었다. 또 전체 답(畓 : 논) 1,875결 가운데 각양면세답이 170결, 진잡탈이 117결 등 모두 287결이 수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직 실답(實畓) 1,586결에만 과세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총 전답 2,837결 가운데 비과세 전답이 669결이나 되어, 수세 전답은 2,168결로 전체의 76%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면세전으로는 광양 내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아록전(55결),¹⁴⁾ 관둔전(12결), 향청(7석락지), 서원전(원답 5석락지), 향교전(學田 5결, 校田 14석락지), 흥학재(興學齋 : 3석락지), 역전(驛田)¹⁵⁾, 그리고 작청(作廳) 복호결

12) 『광양읍지』, 잡역.

13) 『광양현각소사례책』, 도서원.

光陽縣 官田上納
 戶曹田稅米四百六十七石十三斗四升
 雜費米二百三十一石十一斗九升
 米一百六十三石三斗九升
 雜費米五十九石三斗三升
 米十三石十四斗二升
 三手糧米一百七十六石二斗四升
 雜費米七十石五斗四升
 和柔弱主房免稅米七十二石十三斗九升
 雜費米二十四石七斗
 正稅錢四十六兩四錢
 雜費錢七兩
 直稅錢二十三兩四錢五分
 雜費錢十二兩一錢五分
 叔婢首錢十兩四錢
 雜費錢四兩四錢
 宣惠廳大同米一千一百四石
 雜費米三百七十五石六斗三升
 位太二十四石九斗
 雜費米三石
 米六石六升
 均役廳免稅米十六石三斗
 雜費米五石八斗

사진2-72 : 18세기후반 광양현의 전세·삼수미·대동미(부역실총)

14) 아록전(衙祿田)은 면세출부지(免稅出賦地)로 전세는 면제되어 지방수입으로 들어오고 대동미는 내야하는 토지이다. 광양에서는 아록전으로 55결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미 25석과 태 5석으로 수령의 봉름(俸廩)으로 사용되었다(『여지도서』, 봉림).

15) 익신역(益申驛)에는 역리(驛吏)가 35인, 역마(驛馬)가 10필, 그리고 복호(復戶) 42결, 공수위전(公須位田) 4결, 마위답(馬位畓) 20석락, 대전(埜田) 5석락이 있었다. 그리고 섬거역(蟻居驛)에는 역리 94, 역마 6필, 복호 26결, 공수위전 4결, 마위답 187석락이 있었다(『광양읍지』, 역원)

16) 작청의 복호결은 15결인데, 매년 이름 봄에 결가(結價)를 거두어 별성행차시 집대나 작청의 각종 공공경비에 사용하였다(『광양현각소사례책』, 작청).

17) 『속중실록』 24. 숙종 18년 2월 기사.

18) 『비변사등록』 59. 숙종 34년 12월 30일.

19)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조창.

20) 『탁지지』 권7. 조창.

(復戶結) 15결¹⁶⁾ 등이 있었다. 또 광양 외로 유출되는 궁방전, 경사둔전, 공신전 등도 있었다. 이 가운데 궁방전(宮房田)으로는 일찍이 송선군방(崇善君房)과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에서 절수(折受)한 토지가 있었다. 송선군방의 경우 전라도와 경상도의 수영(水營)과 연해의 각 고을과 군진의 전병선 수요의 목재를 키우는 백운산(白雲山)과 관내 5개 면(面)을 떼어갔고,¹⁷⁾ 명혜공주방의 경우 다압면(多鴨面)에 6결의 토지를 절수받고 있었는데 또 6결을 받으려 하니, 백성의 전답이 싸잡혀 들어가는 폐단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¹⁸⁾ 이 외에 화유옹주방(和柔翁主房)에서도 궁방전을 광양에 두고 있었다. 경사둔전으로는 훈련도감(17결, 옥곡면과 태인도 소재), 충훈부, 성균관, 통영 등에 속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 조선후기에 광양에서 부담하였던 전세 총액은 얼마나 되었을까. 18세기 중반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를 보면 전세 미 444석 태 166석, 삼수미 147석, 대동상납미 980석, 결전 1,090양 등 모두 미(米) 1,571석(石), 태(太:콩) 166석(石), 전(錢) 1,090양(兩)을 전세로 부담하였다.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편찬된 『부역실총(賦役實摠)』에 따르면 전세 미 711석 태 285석, 삼수미 246석, 대동상납미 1,485석, 결전 1,155양 등 모두 미 2,442석, 태 285석, 전 1,155양을 중앙에 납부하였다. 19세기 중반 고종대에 편찬된 『광양읍지』에 따르면 전세, 삼수미, 대동미, 결전 등으로 모두 미 2,408석, 태 168석, 전 1,220양을 전세 명목으로 광양에서 부담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전세 총액이 후대로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농지가 증가한 것에 비례한 결과임에 분명하다.

이들 전세는 농민들이 ‘팔결작부(八結作夫)’라 하여 8결 단위로 모아서 호수(戶首: 또는 養戶라고도 함)의 책임하에 조창(漕倉)에 납부하면, 조창에 있는 조군(漕軍)들이 조운선(漕運船)을 이용하여 서울로 운반하였다. 초기에 전라도에는 영산창(榮山倉)과 덕성창(德成倉) 등 2개의 조창이 있었는데, 광양은 나주에 있는 영산창에 전세를 나머지 21읍과 함께 수납했었다.¹⁹⁾ 광양에서 가깝지도 않은 나주까지 세곡을 어떻게(육운인지, 해운인지) 운반했는지는 자료의 부재로 알 수 없다. 그런데 영산창은 칠산 앞바다에서의 잦은 해난 사고 때문에 1511년(중종 6)에 폐창되고 영광의 법성창(法聖倉)으로 이관되었다. 그 때 영산창 소속 22읍 가운데 광주 등 12읍만이 법성창에 소속되었고, 나머지 광양을 포함한 10읍은 임운(賃運) 상납하도록 하였다.²⁰⁾

그에 따라 광양에서도 임운상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세곡을 저장·발선할 수 있는 해창(海倉)을 관아 남쪽 10리에 설치하였다. 농민들이 해창에 세곡을 납부하면 그곳에서 임대한 선박을 이용하여 세곡을 서울로 올려 보냈던 것이다.

농민과 호수들이 추곡을 거두어 전세와 삼수미 및 대동미를 모아 2월까지 해창에 납부하였다. 그러면 임대한 주교사(舟橋司) 소속 훈련도감 대변선 2척에 선적한 후 색리와 감관이 동승하여 3월에 출항하였다. 순천 장도와 경상도 남해 우모도, 그리고 좌수영 앞 바다를 거쳐 30일 정도면 서울에 도착하였는데, 전세는 광흥창(廣興倉 : 관료들의 녹봉을 지급하는 곳)에 대동미는 선혜청(宣惠廳 : 공물가를 관장하는 곳)에 각각 납부하였다.²¹⁾ 세곡(稅穀)을 보낼 때에 중앙에 상납할 기타의 것도 함께 보내기도 하였는데,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둔전 소출이나 장악원(掌樂院)에 내는 악공보의 보미(保米)를, 그리고 군기시(軍器寺)에 보내는 대나무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광양은 세곡 직납읍이었기 때문에 운반 지체와 패선 사고가 발행하면 수령이 문책을 받아야 했다. 실제 패선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마다 수령이 곤혹을 치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광양현감(光陽縣監) 가운데에는 선박에 세곡을 올려 보낼 때 몰래 사사로운 물건을 함께 섞어 보내어 물의를 일으킨 자도 있었는데, 17세기 현종(顯宗) 때에 현감 정세형(鄭世衡)이 쌀 16석, 콩 1석, 메주 2석, 소금 2석, 대나무 40개, 판자 15립, 가마 1부, 매화분재 4좌 등을 몰래 실어 날랐다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²²⁾

조운읍에서 직납읍으로 바뀐 당시에 세곡을 어떻게 운반했는지를 찾기란 자료의 부재로 어려운 실정이다. 아마 일반 민간인들이 생업을 꾸리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인 지토선(地土船)을 임대한 후 해창(海倉) 포구에서 장재·발선하여 상납하였을 것 같다. 광양은 물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남해안과 섬진강변에 포구가 많기 때문에 어업(漁業)이나 선업(船業)에 종사하는 선박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인근에서도 지토선을 임전한 곳도 적지 않았다. 또 수군선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광양읍은 전라좌수영의 수군 편제에 소속되어 현 동 50리 지점에 선소(船所)가 있었고, 선소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다. 또 관내에 통영 소관의 섬진진(蟾津鎭)이 있었는데, 이 곳에는 전선 1척, 방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군선을 임선하여

21) 『여지도서』, 전라도 광양. 전세, 「광양현각소사례책」, 도서원. 최완기는 지방민의 소유 선박인 지토선(地土船)을 이용하여 광양에서 세곡을 임운한 것으로 언급하였다(『조선 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8, 174쪽 표 11과 188쪽 표 12). 광양은 해읍으로 어선과 상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는 주교사(舟橋司)의 선박을 이용하여 세곡을 임운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주교사는 정조(正祖)가 한강을 건널 때 부교(浮橋)를 만드는 선박을 관리하게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여기에 소속된 선박들은 주교의 임무에 동원되고 대신 세곡을 임운하는 혜택을 누렸는데, 훈련도감대변선(訓練都監待變船)이나 경강사선(京江私船)이 주교선으로 동원되었다.

22) 『승정원일기』 196. 현종 7년 7월 27일.



사진2-73 : 해창엿터(광양읍
해창마을)

세곡을 운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 국방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의 훈련도감(訓練都監)과 공조(工曹)에서 재정 충당을 위해 각자의 선박을 임선하도록 광양에 압력을 넣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훈련도감에서 대변선(待變船)이라는 선박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급박한 사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의 긴요함은 다른 곳의

모선(募船)에 견줄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허다한 사공 등의 양료(糧料)가 달리 나올 곳이 없어 가을과 겨울에는 강화(江華)에 대기시켜 놓고, 봄과 여름에는 삼남으로 내려보내 곡물을 실어 옮긴 뒤에 그 뱃삿을 받아 사공의 양료에 보태도록 일찍이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706년(숙종 32)부터 광양(光陽)은 말할 것 없고, 순천(順天)·낙안(樂安)·보성(寶城)·흥양(興陽)·진도(珍島)·강진(康津)·장흥(長興)과 영남의 진주(晉州) 등 9읍의 각종 곡물을 다른 배에는 허용치 않고 다만 훈련도감의 배에만 가득 실어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영조(英祖)대에는 공조에서 세선(稅船)의 규례를 창출하여 순천·흥양·광양·진도·장흥 등 5읍의 세곡을 공조선(工曹船)으로 임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획책하고 있었다. 이에 훈련도감에서는 만약 이 5읍을 잃는다면 앞으로 사공과 결군 등의 요미(料米)를 전혀 잇대어 줄 길이 없어 진실로 매우 걱정된다고 하면서, 순천 등 8읍의 곡물을 전과 같이 도감의 배에 실어보낼 것을 다시 비변사(備邊司)으로 하여금 공조 및 본도에 분부하도록 요청하였다.²³⁾

공조의 이러한 노력은 훈련도감의 반대에 부딪혀 쉽게 성사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영조 3년에 공조에서는 다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게 된다.

본조 소관 4진(鎭)의 나룻배는 사실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승(渡丞 : 나룻터 관리인)을 없애고 별장(別將)을 새로 두었으며, 한정(閑丁)을 모집해서 대오(隊伍)를 편성하여 진(鎭)에 주둔시키겠다는 뜻으로 이미 입계하여 결재를 받았으니 한갓 사람만을 건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23) 『비변사등록』 80. 영조 2년 12월 27일.

근래에는 본조의 물력(物力)이 고갈하여 배를 만드는 여러 차비를 갖추어 주지 못하였고 각 아문(衙門)의 보조 무명도 이미 없어져버려서 매년 신조(新造)와 개삭(改鑿: 수리) 등의 공사를 한 가지 일이라도 변통해 나갈 형편이 없습니다. 작년에 3당상(堂上)이 연명으로 진소(陳疏)하여 양남(兩南)의 대동(大同)과 전세(田稅)의 미태(米太)를 본조에서 강원도(江原道) 선박을 보내서 실어오고 그 선임(船賃)을 받아서 배를 만드는 경비로 쓰게 하여줄 것을 청하였는 바, 비변사로 내려져 비변사에서 이미 복계(覆啓)하여 호남의 열 고을을 지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영남은 으레 선혜청의 장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호남의 열 고을은 나주(羅州)·순천(順天)·장흥(長興)·영광(靈光)·영암(靈岩)·무안(務安)·흥양(興陽)·진도(珍島)·곡성(谷城)·광양(光陽) 등인데 얼마 전에 훈련도감에서 강도(江都)의 대변선(待變船)이 전부터 실어 날랐다는 이유로 순천·장흥·진도·광양 등의 다섯 고을은 도감에서 보낸 배에 싣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무릇 훈련도감에 안부(案付)된 강도선은 겨우 5척에 불과하고, 신도록 된 고을도 전부터 영남의 큰 고을이 있는 만큼 본조에서 실어 나르기로 결정된 고을을 훈련도감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본조는 이 다섯 고을의 선가(船價)를 잃는다면 허다한 조선(造船) 비용을 판출해낼 길이 없어 낭패가 극심합니다. 이 일은 비록 미세한 일인 것 같지만 관계된 바는 매우 큼니다. 또 배를 분송(分送)할 때가 되었는데 이토록 겨루고만 있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호남의 열 고을은 한결같이 모당에서 결정한대로 본조에서 보낸 선척(船隻) 이외의 다른 아문의 선척에는 실어 나르지 말라는 뜻으로 승전(承傳)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²⁴⁾

24) 『비변사등록』 81, 영조 3년 1월 10일.

근래에 본조의 재력이 고갈되어 진선(津船)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갖추어주지 못하였고, 거기다가 각 아문(衙門)의 보조 무명도 이미 없어져버려서 매년 신조(新造)와 개삭(改鑿: 수리) 등의 공사를 한 가지 일이라도 해결해 나갈 형편이 없다고 하소연하였지만, 결국 공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광양에서는 훈련도감의 대변선을 임대하여 세곡을 운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와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광양현각소사례책』에 훈련도감의 대변선을 임대하여 해창에서 세곡을 발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광양현조에 따르면, 전체 가호 228호(인구 1,220명)에서 129명의 정군(시위군 6, 순천 수호군 15, 진군 3, 선군 105)을 배출했었다. 기록은 없지만 정군의 2배에 해당되는 250명 정도가 보인으로 책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략 2호당 1명의 현역병, 1호당 1명의 보인을 배정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군역을 면제받는 가호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군역을 지는 가호의 부담은 이보다 더 무거웠을 것이다.

이러한 군역체제는 16세기 이후에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15세기 후반 성종대부터 현역 복무의 고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군이 사사로이 보인에게서 조역가(助役價)를 받은 후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대립제(代立制)를 양성화하여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였다. 군적수포제는 정군과 보인 및 대역자 사이에서 사사로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더욱 제도화되어 방군수포제(防軍收布制)로 발전하였다. 방군수포제란 병조(兵曹)에서 직접 군역 의무자로부터 1년에 군포(軍布) 2필을 징수하여 입역을 면해주고, 그것으로 군인을 고용하는 제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병조의 군역행정 변화에 힘입어 지방의 각 영진(營鎭)에서도 정병(正兵)이 일정한 군포를 바치면 방수를 면해주었다. 이러하다 보니 이제 군역은 국토 방어나 국방 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각급 관부의 재정 수입과 관련된 문제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 결과 관급 관부에서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었다.

군역제의 변화와 함께 군사제도도 바뀌게 되었다. 조선초기의 군사제도는 병농일치의 국민 개병제, 즉 의무병제를 토대로 하는 오위제(五衛制)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5위제는 정비 당시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으면서 왜군에게 참패를 당한 바람에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한 결과 임진왜란 중에 군제 개편이 착수되어, 선조는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신설하고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 인조대와 숙종대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위영이 차례로 만들어져 훈련도감과 함께 오군영(五軍營) 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렇지만 5군영은 전기와는 달리 모병제에 의한 유급 급료병제로 운영되었고, 그들 군병에 대한 유급 조치로 광대한 둔전과 함께 막대한 군보(軍保)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체 군정의 수요는 전기의 5위제 때보다 후기의 5군영제 때에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광양현조에 따르면, 전체 가호 228호(인구 1,220명)에서 129명의 정군(시위군 6, 순천 수호군 15, 진군 3, 선군 105)을 배출했었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편승하여 비군사 기관에서도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군보를 배정받고 있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양반에서 공사전에 이르기까지 역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징발하여 혼성군으로 편성되는 속오군(東伍軍)을 역시 임진왜란 중에 조직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 수영, 그리고 군현, 심지어 향청이나 향교 및 서원까지도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군정을 소속시키고 그들로부터 군포를 징수하였다. 그리하여 군정의 수요는 전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군정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군역을 부담할 가호(家戶)는 턱없이 부족하여 군다민소(軍多民小) 현상이 나타나 한 사람의 장정이 이중, 삼중으로 군역을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 때문에 형편이 나은 자들은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납속이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양반신분을 얻어 양역의 부담 대상에서 벗어나는 행렬에 뛰어들었다. 또한 군정들이 바치는 군포의 수량 역시 소속처에 따라 1필이나 2필 심지어 3필 등으로 균일하지 않아, 힘있고 눈치 빠른 자들은 혈역(歇役)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전국의 장정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자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현별로 일정액을 배분하는 총액제를 선택하였고, 군포수납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수령과 향리들은 갖가지 농간을 저질러 백골징포, 황구침정, 족징, 인징 등의 폐단이 자행되었다. 결국 양역의 부담은 가난한 농민층에게로 한층 더 집중되어 그들의 파산과 유망을 촉진시켰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광양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양역의 폐단을 시정하자는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어 숙종대에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그 대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지만, 호포, 결포, 유포, 구전 등 논의만 분분한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의를 토대로 1750년(영조 26)에 감필론을 골자로 하는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었다. 균역법에 따라 정부는 농민들이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감해주었고,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일부 중류 신분층에게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이름으로 군포 1필을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주에게 토지 1결마다 쌀 2말이나 돈 5전을 결작(結作) 또는 결전(結錢)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또 종래 각 궁방이나 아문에서 받아들였던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도 균역법을 관리하는 균역청



1750년(영조 26)에 감필론을 골자로 하는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었다.

(均役廳)에서 징수하여 관할하도록 하였다.

균역법의 시행과 함께 양역에 대한 조사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734년(영조 10)에는 각 도마다 담당자를 두어 도의 양역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1742년에는 숙종 말년에 설치했다가 유명무실해진 양역사정청(良役査正廳)을 다시 설립하고, 사정청 관원들에게 중앙기관의 양역 명목 가운데 부당하게 등재된 것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또 감영·병영·수영 또는 본읍에서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 몰래 보유하고 있는 군보(이를 私募屬이라 함)도 없애도록 하였다. 각처에서 보유하는 군정의 수를 줄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작성된 문서가 바로 『양역실총(良役實摠)』이라는 것이다. 『양역실총』에는 각 도와 각 읍의 양역수가 수록되어 있다. 바로 이 『양역실총』의 양역수를 토대로 하여 이후의 균역수는 정해졌는데, 광양의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자료로는 『여지도서』, 『해동지도』, 『여도비지』, 『광양읍지』가 있다. 이제 이상의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후기 광양의 균역의 종류와 수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역실총』²⁵⁾

- 훈련도감 : 포수보 91명, 군향보 120명
- 어영청 : 상번보군 26명, 보군자보 28명, 관납보 61명, 경안보 21명
- 금위영 : 관납보 63명
- 병조 : 기병 38명, 보병 21명, 금군보 77명
- 장악원 : 악공보 10명
- 공조 : 장인 39명, 장인보 1명
- 조군 : 조군 24명
- 수군 : 호보 672명
- 봉군 : 봉군 15명, 봉군보 29명
- 감영 : 영장인 28명
- 병영 : 교사기패관 1인, 진군 7명, 신선 1명
- 좌수영 : 수용군 22명
- 합계 : 1,395명(가호 3,720호, 호당 0.37명)



『양역실총』의 양역수를 토대로 하여 이후의 균역수는 정해졌는데, 광양의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자료로는 『여지도서』, 『해동지도』, 『여도비지』, 『광양읍지』가 있다.

25) 『양역실총』. 전라좌도. 광양현.

26) 『여지도서』, 전라도, 광양.

『여지도서』²⁶⁾

- 훈련도감 : 포보 91, 군향보 120
- 금위영 : 보 63
- 어영청 : 군 26, 자보 28, 보 82
- 병조 : 기병 26, 보병 21, 총순위 10, 총익위 16, 금보 77
- 공조 : 장인 28, 약공보 10, 침선비보 2
- 감영 : 아병 4, 모군 28, 진상보 80
- 병영 : 진군 8
- 봉수 : 별장 12, 군 63
- 좌수영 : 정병 357, 수군 301, 시노정병 50, 사부정병 50, 수용군 22, 여정병 17
- 전영 : 초관 2, 기패관 4, 교사 3, 보군 286, 별대군 13, 보 26
- 합계 : 1,926명(가호 3,560호, 호당 0.54명)

『해동지도』

- 경안부 각색군 : 608명
- 순영속 각색군 : 32명
- 병영속 각색군 : 84명
- 좌수영속 각색군 : 755명
- 전영속 각색군 : 327명
- 통영속 섬진진 모군 : 15명
- 합계 : 1,821명(가호 3,727호, 호당 0.48명)

『여도비지』

- 군 2,714명(가호 3,459호, 0.78명)

『광양읍지』

- 본현 : 군관 50, 초관 2, 도집사 1, 기패관 4, 작대기패관 1, 전선대장 1, 방선장 1, 기패관 3, 포도관 2, 선무군관 70, 봉수별장 13, 병영기패관 1, 각초교사 2, 화포교사 1
- 병조 : 기병 40, 보병 21, 금보 77
- 훈련도감 : 포보 91, 보인 120, 승호 1

- 금위영 : 보인 63
- 어영청 : 보인 82, 어영군 26, 자보 28
- 공조 : 보인 45
- 장악원 : 악공보 10
- 순영 : 장포군 32
- 병영 : 진군 8, 봉수군 63
- 수영 : 정병 330, 수군 284, 여정병 17, 수용군 22
- 전영 : 속오군 276, 속오보인 276
- 사도진 : 사부 60, 수군 6
- 여도진 : 정병 27, 수군 5
- 녹도진 : 수군 1
- 회령포진 : 수군 5
- 본현 : 인리 43, 지인 24, 일수 2, 사령 23, 관노 21, 사색보 300, 주사훈도 2, 사부 30, 포수 34, 화포장 11, 선직 11, 능노군 138, 사후선사격 12
- 합계 : 2,819명(가호 3,794호, 호당 0.74명)

〈표2-28〉 조선 후기 광양의 군정			
시기	자료	전체 군정수	호당 군정수
18세기 중반(영조)	『양역실총』	1,395명	0.37명
18세기 중반(영조)	『여지도서』	1,926명	0.54명
18세기 후반(정조)	『해동지도』	1,821명	0.48명
19세기 전반(순조)	『여도비지』	2,714명	0.78명
19세기 후반(고종)	『광양읍지』	2,819명	0.74명

이처럼 『양역실총』에 따르면 18세기 중반 영조대에 광양에서는 1,395명의 군역을 져야만 하였다. 이 때 총 가호수가 3,720호였으니, 호당 0.37명의 군역을 내면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 양반호, 향리호, 역리호, 무당호 등 면역호가 적지 않았는데, 이들을 제외한다면 양인호에서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역실총』에서는 중앙의 과다 책정과 지방의 사모속 보유를 엄격히 통제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부담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양역실총』에서 표방한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기란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매우 어려웠다. 양인들은 무거운 군역을 면제받으

려 하고, 관부는 그것을 이용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광양의 경우 곧 이어서 편찬된 『여지도서』에서는 벌써 전보다 600여 명이나 늘어난 1,926명의 군역을 부담해야 했다. 당시 총 가호수가 3,560호였으므로 호당 0.54명의 군정을 내야 했다. 군액은 늘어난 반면, 면역호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실제 양인호의 부담은 전보다 크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이후에 있었다. 현감이나 향리 또는 양반들은 부족한 재정을 매꾸기 위하여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군보를 사적으로 모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적인 것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또한 광양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세기 중반의 경우 향교에서는 40명의 보직(保直)을 두고 보가(保價)로 매명당 1양 5전씩을 춘추로 나누어 거두어 석존(釋尊) 제사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원에서는 15명의 보직을 두어 매명당 1양 5전을 거두어 춘추 제사비에 사용하였다. 작청(作廳)에서는 보직 15명을 읍내 한유인으로 정하여 각종 사역에 동원하였고, 등유보(燈油保) 30명을 두고 매명당 1양 4전을 거두어 각방의 등유비에 충당하였다. 통인청(通引廳)에서도 등유보를 10명을 두고 보전(保錢)을 1양 4전씩 거두어 해청의 등유를 조달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현사(縣司)에서는 정조호장보(正朝戶長保) 20명을 두고 매명당 보전을 1양씩 거두어 매년 정월 초하루 호장이 국왕에게 인사하러 갈 때에 각사에 바치는 예목(禮木) 대금과 여비에 사용하였고, 보솔(保率) 15명을 두어 별성행차가 본현에 들어올 때나 담장을 수리할 때에 사역시키었다. 사색보(四色保) 300명으로부터 300양을 거두어 150양은 관고(官庫)에서 쓰고 150양은 민고(民庫)로 내려보냈다. 형방청(刑房廳)에서는 등유보 30명을 두고 매명당 보전을 7전씩 2번 거두어 사용하였다. 예방(禮房)에서는 진상보(進上保 : 海倉 주민) 70명으로부터 4월에 2양씩 거둔 140양을 감영에 보냈다.²⁷⁾

19세기 후반의 경우 광양의 현청(縣廳)에서는 300명의 사색보(四色保)를, 향교(鄉校)에서는 40명의 보직(保直)을, 익신역(益申驛)에서는 42명의 보인(保人)을, 섬거역(蟾居驛)에서는 26명 등의 보인을 두었는데,²⁸⁾ 광양 본읍 외에 병영이나 수영 기타 수군진에서도 열악한 재정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모속을 모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세도정치 시

27) 『광양현각소사례책』. 향교, 작청, 통인청, 현사, 민고, 형방청, 예방.

28) 『광양읍지』. 학교 · 역원 · 군액.

기에 접어들면서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18세기까지만 해도 2,000명 이내(호당 0.5명 내외)의 군정을 내던 것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2,700~2,800명(호당 0.7명 이상)으로 경충 증액된 것으로 보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군역법의 시행과 『양역실총』의 편찬에도 불구하고 군역제의 폐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필요한 군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양인은 양인대로 무거운 양역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는 소요 군정과 현존 가호를 고려하여 군액을 책정하던 종전의 방법을 버리고, 군현별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총액제(總額制)를 채택하여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에 따라 군현에서는 그것을 다시 면리별로 할당하고, 면리에서는 군역가(軍役價)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납부하는 동포제(洞布制)라는 공동납(共同納)을 실시하였다.

광양에서도 동포제를 실시하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찾지 못하여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 인근 순천이나 구례 또는 낙안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²⁹⁾ 당시 대부분의 고을에서는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전 실호(實戶)에서 군포를 부담하였고, 군포계(軍布契)라는 조직을 이용하여 군포전(軍布田)이나 군포전(軍布錢)을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군포를 공동 납부하였다. 이렇게 볼 때 광양에서도 군포를 공동으로 납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869년(고종 6)에 편찬된 『중기(重記)』에 따르면, 정묘(丁卯)년에 관아에서 도합 350양을 ‘군정구폐전’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하여 觀內, 骨若, 津上, 月浦 등 4면에 나누어주고, 그것을 본전으로 삼아 이식하여 군포(軍布)에 보충하라고 하였다.³⁰⁾ 그러니까 적어도 4면에서는 군포전(軍布錢)을 ‘식본취리(殖本取利)’한 돈으로 해당 면에 할당된 군포를 공동으로 납부하였고, 그 군포전을 이식할 수 있는 조직, 가령 향약계(鄉約契)나 군포계(軍布契) 또는 보민계(補民契) 같은 것을 운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정묘년은 언제일까. 2년전인 1867년이거나 아니면 1807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느 시기로 보아야 할지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동포제는 대원군(大院君)에 의해 1871년에 호포제(戶布制)로 전면 개편되었다. 그에 따라 광양에서도 종전의 동포제를 호포제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 역시 자료를 찾지 못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29) 김덕진. 「전라도 낙안군의 호포제 운영」. 『조선후기 경제사연구』. 선인. 2002.

30) 『평양현각방도중기』. 정묘 군정구폐질.

3. 환곡과 본창·외창의 설치

환곡은 관곡을 농사용 종자로 대여하거나, 춘궁기나 흉년시에 빈민이나 재해민에게 빌려주었다가 추수기나 풍년시에 약간의 이자를 보태어 환수하는 진휼제도이다. 조선 개국 초에 태조(太祖)는 의창(義倉)이라는 진휼기관을 설치하여 처음에는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 그러나 점차 대여 수수료를 확보하고 보유 양곡의 자연 소모분을 보충하기 위해 1~2할의 이자를 붙여 징수하였다. 1451년(문종 1)에는 국가재정이 궁핍하고 각 지방의 환곡에 대한 분급 요구가 격증하자, 의창을 보조하는 기구로 각 촌락에 사창(社倉)을 두어 운영하였으나 제대로 유지되지는 못하였다. 1458년(세조 4)에는 흉년에 대비하여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였으나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상설기관이 아니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16세기 전반 중종대에는 진휼청(賑恤廳)을 신설하여 빈민구제 사업을 펼쳤으나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1626년(인조 4)에는 상평창을 진휼청에 통합하니, 평시에는 상평청이라는 이름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흉년에는 진휼청으로 개칭하여 구제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환곡은 세종(世宗) 때부터 1섬당 1말 5되, 즉 10분의 1을 이자로 덧붙여 환수하고 모곡은 그것을 관리하는 지방관청의 수입으로 쓰게 하였다. 16세기 명종(明宗) 때부터는 원곡의 부족을 메운다는 이름아래 모곡(1말 5되) 가운데 1되 5홉을 호조(戶曹)에 회록(會錄 : 장부에 등재하는 일)하도록 하는 ‘일분모회록(一分耗會錄)’이라는 것을 시행하였다. 그러니까 환곡의 이자 가운데 일부가 중앙정부로 올라가 재정수입으로 충당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7세기에 접어들어 왜란과 호란으로 전결과 민호는 축소되고 세금제도는 문란해져 국고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게다가 군비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명과 청 및 일본에 대한 외교교섭이 중요해지는 등 재정수



사진2-76 : 광양현의 본창·외창 등 각관청 (1872년)

입이 줄어들어 왜란과 호란으로 전결과 민호는 축소되고 세금제도는 문란해져 국고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게다가 군비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명과 청 및 일본에 대한 외교교섭이 중요해지는 등 재정수

요는 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환곡의 이식을 증대하여 국비에 충당하기 위해 모곡 1말 5되 가운데 4되 5홉을 호조에 회록하는 ‘삼분모회록(三分耗會錄)’을 인조(仁祖)대에 정부에서는 시행하였다. 이 삼분모회록은 원곡의 비축을 목표로 한 ‘일분모회록’과는 달리 국가경비에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빈민구제와 거리가 먼 제도였다.

이 때부터 모곡(耗穀)으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 관아와 군영에서는 환곡을 신설하거나, 원곡의 수량을 늘리었다. 또 회록율을 1/3회록, 절반회록(이자의 절반을 원곡처로 올림), 전모회록(이자의 전부를 원곡처로 올림) 등으로 차츰 높이거나, 또는 중앙에 올려야 할 회록 모곡을 그대로 두고 다시 원곡으로 삼아 원곡이 과잉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환곡은 대여와 구제의 방편이 아니라 과세와 이식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필요 여하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을 강요하였으며, 그 이식율도 높아 백성들의 원망을 사 농민항쟁을 유발하게 되었다. 결국 환곡은 고리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³¹⁾

광양지역의 환곡 운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란 관련 자료가 빈약하여 어려운 실정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읍지를 통하여 원곡의 분급처와 수량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石이하는 생략함).

31)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1989.

『여지도서』

- 군자창(軍資倉) : 미 90석, 조 172석
- 진휼청(賑恤廳) : 미 158석, 조 721석, 태 345석
- 상평청(常平廳) : 미 243석, 조 843석, 피모 1,121석, 진맥 17석
- 합계 : 미 491석, 조 1,736석, 태 345석, 피모 1,121석, 진맥 17석

『해동지도』

- 각양곡 11,336석

『광양현각방도중기』

- 원회부(元會付) : 미 58석, 조 11석, 피모 13석
- 선저치(船儲置) : 미 3,754석
- 상진(常賑) : 미 392석, 조 81, 태 18
- 임술(壬戌) : 미 75석, 조 19석
- 군이작(軍移作) : 미 183석
- 군작미(軍作米) : 미 1석
- 휴번(休番) : 미 6두, 조 2석, 태 2석

- 승번급대(僧番給代) : 미 165석
- 사비(私備) : 미 2석, 조 57석, 태 1두
- 계축(癸丑) : 미 25석, 조 54석
- 제민창(濟民倉) : 미 4석, 조 7석
- 호환(互換) : 미 2석
- 기축진여(己丑賑餘) : 미 5석, 조 7석
- 경인작곡(庚寅作穀) : 미 20석
- 외탕(外厝) : 미 22석
- 제주모대(濟州牟代) : 조 13석
- 계사이작(癸巳移作) : 미 222석
- 순검(巡檢) : 미 906석, 조 3석, 피모 511석
- 마위(馬位) : 미 1석
- 영진(營賑) : 미 2,063석, 조 83석, 피모 515석
- 영고(營庫) : 미 15석
- 영균(營均) : 미 56석, 피모 32석
- 나포(羅鋪) : 조 6석
- 병신별무(丙申別貿) : 미 120석
- 통영(統營) : 회부(會付) — 미 1137석
회외(會外) — 미 3석, 조 11석, 태 5석
선가(船價) — 미 451석
별향(別餉) — 조 8석
전무(錢貿) — 미 4석
- 합계 : 미 12,706석, 조 565석, 태 26석, 피모 1,073석
- 별검(別檢) : 미 13두, 조 2두
- 선미(船米) : 미 1,318석
- 영호(嶺湖) : 미 14두, 조 1석
- 성역가(城役價) : 미 54석
- 화성상환(華城相換) : 조 103석
- 갑인보진(甲寅補賑) : 조 61석
- 갑오별치(甲午別置) : 미 263석
- 속조(贖租) : 조 22석
- 훈국구관(訓局句管) : 미 17석
- 보군(補軍) : 미 5석
- 수성창(守城倉) : 미 4석
- 군수(軍需) : 조 8석
- 호조이속(戶曹移贖) : 미 326석

『광양읍지』

- 경사(京司) : 미 11,811석, 조 3,347석, 태 269석, 피모 3,886석
- 순영(巡營) : 미 271, 조 203석, 태 20석, 피모 20석, 진맥 6, 미모 2
- 병영(兵營) : 미 114석
- 수영(水營) : 미 162석
- 통영(統營) : 미 61석, 조 503석, 태 1석
- 합계 : 미 12,419석, 조 4,053석, 태 290석, 모 3,908석, 맥 6석



광양에 환곡을 분급한 기관으로는 중앙에서는 군자창, 상진청(상진미, 속조, 나리포), 호조(원회부, 군이작), 훈련도감(훈곡구관), 선혜청(선저치), 균역청(균작미), 비변사(사비, 제민창, 휴변, 수성창, 별검, 승변) 등이 있었다. 지방의 경우 화성부(호환, 화성상환), 통영(회부, 회외 등), 감영(순검, 영고, 보군, 마위, 영진, 영군, 군수), 수영(선미), 병영에서 광양에 환곡을 분급하여 그 이자를 가져갔던 것이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여러 상급기관에서 앞을 다투어 환곡을 분급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광양에서도 자체적으로 환곡을 운영하여 재정 충당의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균역미(均役米)라고 불리는 미곡 263석을 봄에 환곡과 함께 결환(結還)이라 하여 토지에 대출하였다가 가을에 거두어서 주인역가(主人役價)나 각종 물건 구매가에 사용하였다. 또 환미(還米) 100석을 마련하여 33석은 삼반관속(三班官屬 : 향리, 군관, 관노)의 양곡 조달을 위해, 77석은 각청을 왕래하는 관속들의 여비를 조달하기 위해 장리로 취식하여 가을에 거두도록 하였다.³²⁾

이들 기관에서 광양에 분급한 환곡의 규모는 매우 방대하였고, 그것은 후대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다. 18세기 중반에는 미 491석, 조 1,736석, 태 345석, 피모 1,121석, 진맥 17석 등 모두 3,710석이 분급되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는 각양 곡물이 11,336석이었다 하니, 후대로 갈수록 분급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급량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미 12,706석, 조 565석, 태 26석, 피모 1,073석 등 무려 14,370석이나 분급되었다. 이처럼 분급 기관과 그 양이 후대로 갈수록 증가한 것은 재정 충당을 위하여 전개된 것으로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광양에서는 이들 원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설하였다. 읍지 창고조에는 본창(本倉), 관창(管倉), 진휼창(賑恤倉), 저치창(儲置倉), 군기고(軍器庫), 화약고(火藥庫), 관청고(官廳庫), 도무창(都務倉), 외창(外倉), 선소창(船所倉) 등 10개의 창고가 언급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창(읍내, 16칸), 관창(읍내), 진창(읍내), 외창(동 40리 소재, 20칸)이 환곡을 관리하였던 창고로 여겨진다. 특히 본창과 외창이 많은 환곡을 관리하였는데, 본창(本倉)은 도창(都倉)으로서 각 창고의 곡물과 장부를 총괄하였고, 외창(外倉)은 통영의 환곡을 관장하였다. 이들 창고가 있는 마을을 보통 창촌(倉村)이라 하는데, 창촌 주민들은 다른 부역을 면제 받는 대신 창고 검열

32) 『광양현각소사례책』, 균역책, 본창.

시의 짐꾼이나 창고의 경비군에 동원되었고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곡물 밑에 까는 나무나 위에 덮는 짚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들 창고에서는 도감(都監), 색리(色吏), 고자(庫子)라는 직임을 두어 분급과 수납 업무를 처리하였다. 어느 고을이나 도감은 양반이, 색리는 향리가, 고자는 관노가 맡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들은 하곡(夏穀 : 보리나 콩)이나 추곡(秋穀 : 쌀이나 벼)의 모곡을 거두어들일 때 떨어져 나간 것을 보충한다 하여 낙곡(落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못쓰게 변한 것을 바꾼다 하여 색곡(色穀)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분을 거두었다. 가령, 『광양현각소사례책』(19세기 중반)에 따르면 본창과 관창과 진창에서는 각각 매석당 낙곡 3승을, 외창에서는 매석당 낙곡 3승과 색곡 1승을 원모곡 외에 더 거두었다. 이들 낙색곡(落色穀)은 도감의 음식비, 마감채(磨勘債 : 감영의 회계 감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일종의 부가세), 창고 관리용 각종 잡비, 수령 식사용 채소나 과일, 관용 사기나 유리, 문서 작성용 종이 등을 조달하는데 사용되었다. 또 환곡을 중앙기관에 상납할 때에 소요되는 선박 운반가, 곡량을 헤아리는 용기인 되나 말을 개조하는 비용, 축난 부분 보충액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별도로 더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낙곡이나 색곡 외에 가분(加分 : 원곡의 50%를 창고에 보관하고 50%를 민간에 분급해야 하는데 그 이상을 민간에 분급하는 것)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식년호적(式年戶籍 : 3년마다 작성하는 호적)을 작성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호당 전 1전 5푼을 거두어 사용하였는데, 계묘년에 서(徐) 판서(判書)가 전라도를 순찰할 때에 환곡을 가분(加分)한 것을 돈으로 바꾼 금액 660양을 호적비 본전으로 각면에 연리 30%로 분급한 적이 있었다.³³⁾ 그러니까 가분을 통해 호적비 본전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광양에서는 환곡의 이자를 거두면서 낙색곡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곡물을 거두어 각종 공공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중앙에서 합법적으로 이자의 일부를 광양에 내려주어 공공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가령, 원회부곡(元會付穀)은 모곡의 10분의 9를(중간에 폐지), 상진곡(常賑穀)과 제민곡(濟民穀)은 각각 모곡의 5분의 1을 광양에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을 광양에서는 춘추 제사시 제수물, 의사자 구호비, 국마 분양마 사육비, 각 창고의 등유가 등으로 사용하였다.³⁴⁾ 이러한 반대 급부를 내려주기 때문에 환곡의 수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수령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703년(숙종 29) 여러 도의 환곡

33) 『광양현각방도중기』, 호적방.



광양에서는 환곡의 이자를 거두면서 낙색곡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곡물을 거두어 각종 공공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중앙에서 합법적으로 이자의 일부를 광양에 내려주어 공공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34) 『광양현각소사례책』, 본창.

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을 등급을 나누어 논죄한 별단에 따르면, 광양(光陽)은 오래된 환곡을 다 받지 못한 죄로 하등급으로 판정받아 수령이 형장을 맞은 적이 있었다.³⁵⁾

광양의 환곡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영(統營)의 환곡이다. 통영곡은 19세기 전반의 경우 가장 많은 양으로서 무려 500석이나 되었고, 그것을 관장하는 외창의 규모가 관내에서 가장 큰 20칸이나 되었다. 광양은 수군 편제에 있어서는 전라좌수영 관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과 통영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데에는 섬진(蟾津) 때문이었다. 1603년(선조 36)에 통영에서는 섬진에 도청(都廳)을 설치하고 군사를 모아 두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방어의 전진기지로서 군사를 주둔시킨 적이 있어서, 그리고 임진왜란 겪은 직후라 왜군의 재침을 막기 위한 전략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광양의 섬진도청을 두치강도청(豆致江都廳)이라고도 하는데, 통영에서는 이를 통해서 재정수입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1687년(숙종 13)에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의 낙안(樂安) 땅에 이른바 우수영도청(右水營都廳)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규례는 수영에서 감관과 색리를 선발하고 본전(本錢) 3천석의 곡물을 내어주어 1년 안에 이식으로 3백석씩을 납부하도록 책임지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감색과 색리들이 본전을 가지고 가까운 고을의 포민(浦民)들에게 억지로 소금과 고기를 사들여서 그대로 낙안의 도청이 설치된 곳으로 실어옵니다. 그러하여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자들을 전부 몰아내고 소금과 고기를 근처 주민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13되들이 큰 말로 강제로 더 받아들여 관청에 수량대로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취하여 모두 자기들 주머니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해변가의 잔악한 백성들이 참혹하게 괴롭힘을 당하여 원망하는 자가 한이 없습니다. 신이 남방 고을에 있을 때 이 폐단을 익히 알았으며, 통영에서 설치한 광양(光陽)의 두치강도청(豆致江都廳)도 이 규례와 같습니다. 통영과 수영에는 본래 경비가 넉넉하여 이렇게 불법으로 거두어들이는 일이 없더라도 수용이 풍족합니다. 어찌 명분 없이 백성을 괴롭히는 정치를 하여 한없는 원망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도로 하여금 일체 금지시키게 하여 조정에서 백성을 걱정하는 뜻을 보이셔야 합니다.³⁶⁾

35) 『비변사등록』 53, 숙종 29년 5월 25일.



광양의 섬진도청을 두치강도청(豆致江都廳)이라고도 하는데, 통영에서는 이를 통해서 재정수입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36) 『비변사등록』 41, 숙종 13년 4월 30일.

고 한 바와 같이, 통영에서 도청에 재물을 내려주고 그것을 이식하여 상납하도록 하니 현지에서는 민원을 유발하면서까지 강행하였던 것이다. 섬진

은 1705년(숙종 31) 통제사와 전라감사가 상의하여 올린 장계에 의해 진(鎭)으로 승격되었다. 그렇지만 섬진진(蟾津鎭)은 여전히 통영의 소관으로 종 9품의 별장(別將)이 파견되었다. 통영에서는 이러한 섬진진에까지 환곡을 배급하였는데, 정조(正祖) 때의 경우 미 535석, 조 150석이나 되었다.³⁷⁾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통영에서는 광양에 막대한 환곡을 분급하였고, 광양에서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섬진진과 가까운 곳에 외창(外倉)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모곡을 돈으로 바꾸어 상납하도록 하였다. 1814년(순조 14) 섬진에 수납하는 호남의 광양 등 5읍의 모곡 3만 3천여 석을 작전(作錢)하여 상납하도록 하였던 것이 그것이다.³⁸⁾ 모곡의 운송을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려면 어차피 돈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 그러하였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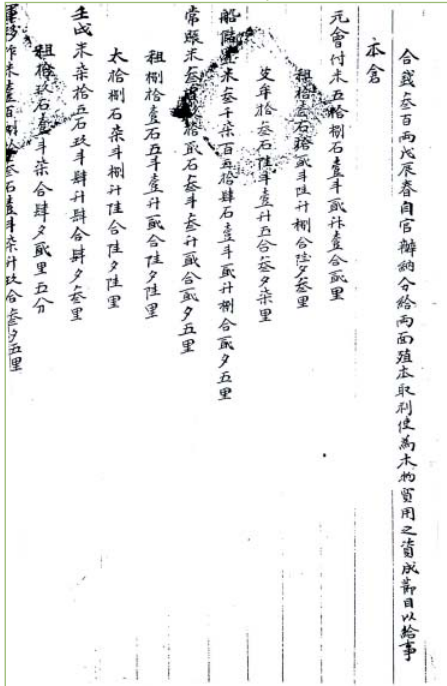


사진2-77 : 1869년 광양현의 환곡과 수량(광양현 각방도중기)

4. 토산물과 진공(進貢)·해세(海稅)의 상납

광양은 평지와 산지를 끼고 있고, 강과 해안을 접하고 있어 물산이 풍부하였다. 그래서 관내에 장시(場市)가 4개, 포구(浦口)가 7~8개나 있어 이들 토산물에 대한 유통이 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광양지역에서는 어떤 물산이 산출되었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16세기에는 해수산물로 은어·조기·숭어·농어·병어·준치·오징어·낙지·왕새우·홍합·전복·미역·감태·김, 농임산물로 생강·석이버섯·꿀·표고·송이·차·감·닥·석류·유자·대나무·화살대·울금·복령, 광공업품으로 철·철 등 30종이 산출되었다.

『동국여지』에 따르면, 17세기에는 이전보다 토산이 늘어나게 된다. 해수산물로 소금·은어·오징어·조기·숭어·농어·병어·준치·낙지·왕새우·홍합·전복·미역·감태·김, 농임산물로 닳나무·대나무·화살대·석이버섯·표고버섯·송이버섯·꿀·차·감·석류·유자·생강·

37) 변동명, 「섬진진」, 『광양시의 호국항쟁유적』, 순천대학교 박물관, 1999.

38) 『비변사등록』 204. 순조 14년 1월 13일.

울금·복령, 광공업품으로 은·철·철·황랍 등 33종이 17세기에 광양지역에서 산출되어 이전보다 3종(소금, 은, 황랍)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볼 때 소금이나 황랍은 지역적 사정으로 보아 이전부터 생산되었을 것 같으나 은이 추가된 것이 주목된다.

그런데 『여지도서』에 따르면, 산출물이 18세기에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해수산물로 은어·농어·오징어·낙지·석화·감태, 농임산물로 석류·표고버섯·송이버섯·감·닥나무·화살대·백출·창출·도라지 등 15종이 산출되어 이전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산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록과 보고의 차이에서 유래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석류·유자·생강·울금·복령·철·은 등이 기록에서 사라지고, 새로이 백출·창출·도라지 등 약재가 수록된 것이 눈에 들어온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오히려 토산물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광양읍지』에 따르면 해수산물로 은어·오징어·조개·농어·황어·늘어·병어·준치·낙지·왕새우·김·석화·백합·홍합·소금, 농임산물로 생강·석이버섯·표고버섯·송이버섯·꿀·차·감·닥나무·석류·유자·칠·대나무·모과·복숭아·은행·호도·울금·복령·당귀·시호·창출·백출·도라지·승마·백지·작약·황련·천문동·맥문동·자소·박하·남성·상백피·대극·반하·형개·우슬·차전자·원지·사삼·지실(탱자)·매실·모향·연교·석류근피·고채(씀바귀)·강활·독활·향유, 동물로 꿩·메추리 등 무려 66종이 19세기에 광양지역에서 산출되고 있었다. 이전과 비교하여 특히 약재류가 매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들 토산물은 어떻게 유통되었을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광양 관내에는 읍내장(읍내, 1일과 6일 개시), 옥곡장(동 30리 옥곡면, 4일과 9일 개시), 섬거장(동 40리 진상면, 3일과 8일 개시), 월포장(동 50리 월포면, 5일과 10일 개시) 등 4개의 5일장 장시(場市)가 있었다.³⁹⁾ 이들 장시에서 유통된 상품의 종류를 전해주는 자료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유일하다. 고을의 전체 장시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가장 상거래가 활발한 읍내장 1곳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계가 있지만, 이에 따르면 광양 읍내장에서는 쌀, 면포, 면화, 명주, 삼베, 민어, 송어, 농어, 조기, 오징어, 은어, 병어, 낙지, 석화, 새우, 김, 홍합, 대합, 소금, 호도, 석류, 솔, 종이, 죽제품 등 24종류의 상품이 매매되었다. 전라도 그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광양 관내에는 읍내장(읍내, 1일과 6일 개시), 옥곡장(동 30리 옥곡면, 4일과 9일 개시), 섬거장(동 40리 진상면, 3일과 8일 개시), 월포장(동 50리 월포면, 5일과 10일 개시) 등 4개의 5일장 장시(場市)가 있었다.

39) 『중보문헌비고』 165, 시적고, 부항시, 『임원경제지』, 예규지 4, 화식, 팔역장시.



광양지역은 토산물이 풍부하고, 그것들은 발달한 육상이나 해수상 교통망을 이용하여 장사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품목이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들은 대체로 토산품으로 여겨진다. 앞의 자료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면화(면포)나 명주 및 삼베도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미 적지 않게 생산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광양지역은 토산물이 풍부하고, 그것들은 발달한 육상이나 해수상 교통망을 이용하여 장사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그러하다 보니 자연 광양에 배정된 공납(貢納)과 진상(進上)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공납과 진상이란 토산물을 중앙기관이나 왕실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17세기에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진공을 현물 대신 대동미로 바치도록 하였으나, 일부 품목은 여전히 예전처럼 현물로 납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광양에서도 적지 않은 물종을 진공물로 상급기관에 바쳤다. 『광양읍지』를 토대로 19세기 광양의 진공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삭선(朔膳) : 마른 송어, 송어 알, 전복, 생 전복, 장인복, 해삼, 김, 가루 미역, 마른 미역, 산 썩, 석류, 표고, 초석, 조을소, 칠유 부채, 백유 부채.
- 혜경궁(惠慶宮) : 전복, 장인복, 송어, 마른 송어, 해삼, 홍합, 가루 미역, 다시마, 해삼, 절인 은어, 생간, 표고, 석류, 호도
- 대전(大殿) : 해삼, 전복, 장인복, 홍합, 가루 미역, 백자(젓)
- 영조대전(英祖大殿) : 유자, 전복, 가루 미역, 석류, 산 썩, 다시마
- 왕대비전(王大妃殿) : 전복, 장인복, 홍합, 해삼, 가루 미역, 김, 산 썩, 산 노루, 초석, 조을소
- 중궁전(中宮殿) : 전복, 장인복, 홍합, 해삼, 가루 미역, 다시마, 마른 송어, 절인 은어, 생강, 청대죽
- 비변사(備邊司) : 전죽
- 호조(戶曹) : 초석, 고수(羔鬚)
- 군기시(軍器寺) : 대나무
- 기로소(耆老所) : 장지(壯紙), 백지(白紙), 매실, 칼, 철, 낫쇠
- 병영(兵營) : 전죽(箭竹)
- 수영(水營) : 전죽(箭竹)
- 통영(統營) : 전죽(箭竹)

이렇게 보면 19세기에 광양에서는 각 궁전과 중앙관청 및 지방영문에 가

루 미역, 마른 미역, 고수(羔鬚), 김, 낫쇠, 다시마, 대나무, 전죽(箭竹), 청대죽, 매실, 백유 부채, 칠유 부채, 백자(갓), 백지(白紙), 산 평, 산 노루, 생강, 생강, 석류, 송어, 마른 송어, 송어 알, 유자, 장지(壯紙), 전복, 생 전복, 장인복(長引鰯), 절인 은어, 조을소, 철, 초석, 칼, 표고, 해삼, 호도, 홍합 등을 상납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광양지역에서 산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해삼이나 백자(갓) 같은 품목도 정황으로 보아 산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양에는 어장(漁場)과 염분(鹽盆), 그리고 선박(船舶)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도 적지 않았다. 어장, 염분, 선박에 대해서 17세기에 왕실이나 중앙관청에서 재정충당을 위해 사사로이 점유하여 세금을 거두어갔다. 가령, 1724년(경종 4)에 비변사에서는 각처의 어장세, 선세, 염분세는 반드시 절수(折受)한 연후에야 수세할 수 있는 것인데 근일에 각사에서는 애당초 절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점유하여 바로 차인(差人)을 보내서 수세하고 있으니 몹시 부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기로소(耆老所)에서 낙안(樂安)·광양(光陽)·흥양(興陽)·보성(寶城)·기장(機張) 등의 여러 섬과 포구에서 자의로 수세하고 있는 어세·선세·염분세 등 각종 수세를 우선 모조리 혁파하고 차인을 보내지 말라는 뜻을 건의한 적이 있었다.⁴⁰⁾ 그러니까 기로소에서 광양의 여러 섬과 포구를 무단 점유하여 수세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충훈부(忠勳府)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다. 충훈부에서는 원역(員役)의 식료(朔料)와 당상(堂上)·낭청(郎廳)의 약용(藥用) 등 각종 경비 조달을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에 염전과 어전 및 태전(苔田)을 두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광양(光陽)에도 있었는데, 차인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수령으로 하여금 수세하여 상납하도록 하였다.⁴¹⁾

이렇게 각처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해세(海稅: 어·염·선세)를 거두니 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영조대에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면서 각처의 해세 징수를 폐지하고 균역청(均役廳)에서 일괄 징수하여 감필(減匹)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바로 이 때 광양에서 균역청에 상납한 해세가 『여지도서』(18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세 328양, 염세 160양, 어장세

40) 『비변사등록』 75. 경종 4년 윤4월 24일.

41) 『비변사등록』 84. 영조 4년 7월 3일.

香	芥	冬	桔	杏	箭	蜂	魚	銀	物
連	牛	紫	梗	胡	石	蜜	真	口	產
翹	膝	蘊	升	桃	花	松	魚	魚	
石	車	朴	麻	鬱	白	草	絡	鳥	
榴	前	荷	白	金	蛤	茶	締	賊	
根	子	南	芷	茯	甘	柿	大	魚	
支	遠	星	芍	苓	蛤	楮	蝦	石	
苦	志	桑	藥	當	鹽	榴	海	秀	
荃	沙	白	黃	歸	雉	石	衣	魚	
羌	蔘	皮	蓮	柴	鷄	榴	薑	魚	
活	枳	大	天	胡	木	子	石	黃	
獨	實	戟	門	蒼	果	鐵	草	魚	
活	梅	半	冬	木	桃	漆	薑	訥	
香	實	夏	麥	白		竹	香	魚	
薑	茅	荆	門	木			草	兵	

사진2-78 : 19세기 광양의 풍부한 물산

277양 등 765양을 춘추로 나누어 징수한 다음 육로로 상납했다. 『광양현 각소사례책』 균역색조에 따르면 19세기 중반에는 해세가 720양이었는데, 이것의 1/10(72양)을 춘추로 거두어 관용에 충당하였다. 이에 대해 19세기 후반 『광양읍지』에 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선박 39척에 76양, 염부(鹽釜) 43곳에 278양, 어전 183곳에 297양, 어망 6건에 35양 등 해세가 686양에 이르렀다.

5. 식리(殖利)와 지소(紙所) · 민고(民庫)의 운영

식리란 관아에서 화폐를 민간에 분급하고 그 이자를 거두어 재정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일종의 공채(公債)인 것이다. 1678년(숙종 4)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법정화폐로 통용되기 시작한 이래 조선후기의 경제는 화폐경제체제로 편입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조세를 곡물이나 포목 대신 화폐로 대납하게 되었고 민간에서는 고율의 사채(私債)나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관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본전(本錢)을 마련하여 관내 면리나 전결 또는 상인 등에게 분급한 후 고율의 이자를 거두는 식리를 행하여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기 시작하였다.⁴²⁾ 특히 재정 지출이 폭증하면서 재정 사정이 어렵게 되자 지방관청에서는 식리를 대체 세원으로 적극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편승하여 광양에서도 식리를 재정 수입원으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광양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식리를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재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광양지역의 식리 운영 내역을 잘 알려주는 것으로 『광양현각소사례책』(1850년 작성)과 『광양현각방도중기』(1869년 작성)라는 자료가 있다.

1850년(철종 원년)에 작성된 『광양현각소사례책』에 의하면, 광양현 내에는 향청(鄉廳) · 작청(作廳) · 장관청(將官廳) · 민고(民庫) 등 4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 여러 기관은 중앙이나 지방의 상급관청에 상납할 조세의 수세와 함께 각종 명목의 자체 운영 경비를 징수하고 있었다. 또한 세입 전 항목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재원 지출체계가 각각 형성되어 있었다. 이 중 각 기관이 운영한 식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오영교, 「조선후기 지방관청 재정과 식리활동」,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해안, 2001.

〈표2-29〉

광양현의 관청식리 운영

기관명	식리전	이자율	운영방법	용도
鄉廳	陞戶錢 271양	연 5할	3년간 취식	승호지랑, 경영문정전, 검색노자
	什物錢 100양	연 5할	선창감관에 분급	전선집물 준비
通引廳	144양	연 4할	성내각인에 분급	원근행차노자
縣司	柴炬錢 1,420양	연 3할	춘추 2번 수봉	나무 구매
	(炭錢) 300양	연 5할	춘추 2번 수봉	석탄 구매
	針貫錢 170양	연 5할		침비에 지급
民庫	補民錢 3,610양	연 5할 →3할		전관, 사객, 지공 등
承發房	200양	연 5할	각면에 분급	말 임대
工房	50양	연 5할	3면에 분급	내외 아사 수리
戶籍色	籍費錢 660양	연 3할	각면에 분급	식년 호적비
外倉	200양			통영 환곡 결손분
兵船色	掘浦錢 45양	연 3할	4면에 분급	
	30양	연 5할		춘추 2번 굴포
紙所	紙本錢 970양	연 5할	각면 분급, 춘추 수봉	종이 제작·구매
書院	保直錢 12양	연 5할	유실인에 분급	춘추 제사

이 가운데 대표적인 식리전을 살펴보도록 하자. 승호전(陞戶錢)은 3년마다 훈련도감에 보내는 승호군의 장비와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설되었는데, 본전 271양을 각면에 3년간 5할 이율로 분급하여 407양을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 300양은 3년마다 뽑아 올리는 승호군의 경비로 지급하고, 107양은 승호군의 감봉시 경사와 영문의 정전 및 영거 검색의 노자로 사용하였다.

통인청에서는 본전 162양을 월리로 취식한 이자를 원근 행차시의 여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중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흩어져 버리자 기해년에 다시 재화를 모아 144양을 마련하여 읍내의 사람들에게 연리 40%로 분급하여 통인청 경비로 사용하였다.

시거전(柴炬錢)과 탄전(炭錢)은 관아에서 사용하는 시거(柴炬: 빨감)나 탄(炭)을 구매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시·거·탄은 호장(戶長)이 책임자로 있는 현사(縣司)에서 관리하였다. 현사에서는 18세기 중반에는 시의 경우 민호에서, 탄의 경우 전결에서 거두어 각처에 공급하였다.⁴³⁾ 그런데 19세기 중반 『사례』에 따르면 시거를 ‘가좌성책(家座成冊)’을 이용하여 원정호 1,992호에서 매호마다 목(木)은 1단, 거(炬)는 1병씩 매년 춘추 2회 거두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기축년에 암행어사가 광양에 들어올 때에 사징전(查徵錢: 『중기』에는 경인년에 都書員으로부터 전결 80결 50복의 값을 내어 받아 본전 1,420양을 만들었다 한다) 1,420양

43) 『여지도서』, 불문.



광양의 42개 기관 가운데 대표적인 재정기관으로는 지소(紙所)와 민고(民庫)를 들 수 있을 것이다.

44) 김덕진, 「조선시대 지방관영 지소의 운영과 그 변천」, 『조선후기경제사연구』, 선인, 2002.

을 마련하여 장리로 취식하여 춘추 2번 이자를 거두어 나무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탄은 전결 8결 당 봄에 6두, 가을에 12두씩 거두어 사용하였는데, 을해년에 수령이 민폐를 염려하여 본전 300양을 마련하여 민간에 장리로 파급하여 취식하여 탄 330석을 구매하였다. 이 외에 지본전과 보민전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지소와 민고를 설명하면서 언급할 것이다.

광양의 42개 기관 가운데 대표적인 재정기관으로는 지소(紙所)와 민고(民庫)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소는 조선시대에 저(楮: 닥나무)가 산출되는 지역에 관용이나 상납 종이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관아에서 직접 설립하여 경영하는 관영제지소이다.⁴⁴⁾ 그러한 지소가 인근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에도 있었는데, 읍내에서 북쪽 30리 거리의 송천사(松川寺)에 지소가 설립되어 있었다. 지소가 설립하려면 닥나무가 산출되어야 하는데, 광양의 경우 『세종실록지리』(15세기 편찬)와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 편찬)은 말할 것 없고, 『동국여지지』(17세기 편찬)와 『여지도서』(18세기 편찬), 그리고 『광양읍지』(19세기)에 닥나무가 산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양은 초기부터 닥나무가 산출되고 있었는데, 19세기에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여도비지(輿圖備志)』에 따르면 저전(楮田)이 93곳이나 있었다 한다.

이러한 닥나무 산출 때문에 상당히 일찍부터 지소가 설립되어 종이를 생산하였을 것이고, 거기서 생산된 종이는 중앙이나 감영에 상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아의 각종 용도나 향교의 창호지 또는 백일장의 시험지 등으로 공급되었다. 그런데 임술년 이후 피저(皮楮) 3,900근을 구매하여 종이를 제작해 왔는데, 닥나무 값의 앙등으로 닥나무 구매비와 잡비가 매년 증가하여 그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징수를 자주 행하니 하나의 폐단이 되자 기묘년(1818년?) 가을에 지소를 혁파하였다. 기묘년에 지소를 혁파한 후 각면에 소재한 지본전(紙本錢), 제지공구 방매전(放賣錢), 지본가미(紙本價米) 작전(作錢)을 합친 자금을 각면에 분급·이식하여 거둔 이자로 관용 종이를 구매하거나 기타 경비에 사용하였다. 혁파 당시 각면에 소재한 지본전은 800양이었는데, 750양은 언답 4석락지를 방매한 것이고, 50양은 다압면의 대나무를 방매한 것이다. 제지공구 방매전은 40양으로 송천사에 소재한 철술을 방매한 것이다.

광양의 여러 재정기구 중에서 가장 방대한 자금을 가지고 다양한 지출활동을 펼쳤던 곳이 바로 민고(民庫)이다. 민고는 17세기 이후 등장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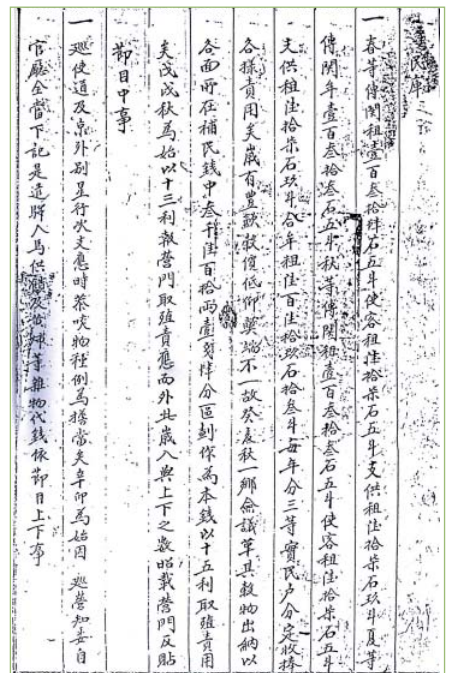
하여 조선후기 최대의 지방재정기구로 성장하고 방대한 재정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각 계층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⁴⁵⁾

먼저, 광양 민고의 수입을 살펴보자.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편찬된 『부역실총(賦役實摠)』에는 민고의 그 내역은 생략된 채 수입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그 당시 광양 민고에서는 미 812석, 전 2,761양을 수입으로 하였다. 이들의 내역은 『사례』와 『중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전관(傳關), 사객(使客), 지공(支供)에 소요되는 조(租) 669석을 매년 3번으로 나누어 빈잔호를 제외한 실민호(實民戶)에서 거두어 각종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마다 풍흉이 있고 곡가가 하락·양등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계해년에 전체 고을 여론에 따라 곡물출납을 폐지하고 각면 소재 보민전(補民錢) 가운데 3,610양을 떼어내어 본전으로 삼아 연리 50% 이율로 취식하여 경비로 사용하였다. 무술년에는 연리를 30%로 하향하여 이식하였다. 보민전은 우채전, 혜민전, 답방매전, 죽발매전, 사출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사색보(四色保)라고 불리는 군보 300명으로부터 300양을 거두어 150양은 관고(官庫)에서 쓰고 150양은 민고로 내려주었다.

이어 광양 민고의 지출을 보면, 관찰사 행차나 경외의 별성(別星 : 임금의 명을 받고 지방으로 출장간 관료) 행차시 접대에 소요되는 다담(茶啖 : 손님 접대시 내놓는 다과) 물종과 그러한 물종을 운반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담당하였고, 중앙기관이나 각 영문이나 각 읍에 공무차 보내는 사람이나 물건의 교통비와 운반비, 면주인이나 창고지기 등이 외촌으로 출장갈 때에 드는 여비, 민고의 창고 보수비, 일월식이나 춘추 수군 훈련시 소요되는 황초, 춘추 각종 제사(여제, 성황제, 사직제 등)에 소요되는 제수물, 객사에서 거행하는 삭망하례(朔望賀禮) 때의 황초, 관용 인주, 담장 수리 인부가 등을 부담하였다. 그러니까 광양의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임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부분 민고에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5) 김덕진, 「민고의 설립과 운영」,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사진2-79 : 광양의 최대 재정기관인 민고(광양현 각소사례 책)



집필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덕진